

「코로나19(COVID-19)」 관련

#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2020. 9. 8.



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이니 귀 사업장 사정에 적합하게 적용  
하시기를 바랍니다.

## I 직무교육

-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금번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유예함
  -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나 격리자 또는 의심자 발생 여부와 무관
  - \*\* '20.2.23 기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4단계(심각)임 [1단계(관심) → 2단계(주의) → 3단계(경계) → 4단계 (심각)]
  - \*\*\* 해제는 4단계 중 1단계(관심)까지 모두 해제된 상태를 지칭함
- 다만,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일로부터 6개월 후라도 직무교육 기관의 일정상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접수하고 12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직무교육 일정 변경) 직무교육기관은 금번 「감염병 재난」 상황 기간 중에 운영하기로 승인받은 직무교육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단에 이를 통보하고 구체적인 변경 일정은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 후에 확정 가능
  - 공단은 직무교육 일정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교육 일정 조정
- (평가시 불이익 금지) 공단은 「감염병 재난」 상황으로 인한 직무교육 취소나 연기 등으로 직무교육기관이 교육기관 평가에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할 것

○ 직무교육기관의 교육생 출결 관리

- (확진환자 등) 감염증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일괄 접촉자)\*\*\*\***에 대한 격리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격리 기간 등에 대해 **출석(교육 수강)**으로 인정

\* **확진환자**: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중국 후베이성에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와 확진환자와 접촉하고 증상이 있는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국을 방문하고 14일 이내 폐렴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일괄 접촉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증상이 없는 사람

○ (동일과정 교육생) 감염증 **확진자**와 동일과정을 수강한 **교육생, 교사** 강사 등은 14일 이상 자가격리 및 능동 감시·관리할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한 후 관할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통보**

- **의사환자와 유증상자와 같이 교육을 받은 교육생, 교사, 강사** 등은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검진받은 1일(8시간)은 출석(교육수강)**으로 인정

\* 상세 조치 내용은 '20.1.31. 기 시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6쪽 “다. 사업장 내 추정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참조

○ (직무교육과정 위생 조치)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교육 시작 전에 손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 예방수칙 안내문 부착, 손 세정제 비치 등 [자세한 내용은 기 시달한 사업장 대응 지침 2쪽 및 붙임 1 (감염병 예방 수칙), 붙임 2 (카드 뉴스) 참조]

○ (교육기관의 기본인력 강의) 금번 「감염병 재난」 상황이 발생한 분기부터 **위기경보가 해제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까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시간 충족 여부 확인을 유예함

② 정기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

◆ 안전보건교육 실시 원칙: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금번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 시까지 정기교육 실시 방법을 전직원 집체교육보다는 “가급적 소규모 단위”로 교육하는 것을 권장함**

- 교육장에는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 부착, 손 세정제 및 마스크를 비치하고, 교육 전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안내**
- 「**감염병 재난**」 기간에는 **매일 작업 전 5분 또는 격일 10분 이상 등 정기적으로 코로나19 예방 관련자료 (사업장 대응지침 교육,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실천 방안 교육 등)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코로나19 예방교육 반복 실시**

○ 공정별 또는 작업별 과, 반, 조 등 소규모 단위로 정기교육 실시

- 관리감독자(부서장, 과장, 직장, 조장, 반장 등)는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근로자를 **회의테이블, 교육장이나 회의실 등의 장소에 집결**시키는 것보다, 가능한 근로자의 근무(작업) 위치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정기교육을 한번에 모두 실시하는 것 보다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 실시\*하되, 가급적 1회에 30분을 넘지 않도록 할 것**

\* 작업 전 5분 또는 10분 교육, TBM(Tool Box Meeting) 등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안전보건**” APP → “**10분 안전교육**” 이용시 **1인 교육** 또는 관리감독자의 지휘감독하에 다수근로자 **동시 교육** 가능 (교육시간 자동 기록, 붙임 1 참조)

○ (교육 자료 배포) 교육자료는 가능한 서면자료를 배포하기 보다는 **전자적방법(카톡, 밴드, 이메일 등)으로 배포할 것**

▶ 근로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교육내용을 주지(숙지)토록 한 후 관리감독자가 교육대상 근로자별로 질의응답하여 교육내용의 주지(숙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기교육 실시 가능

○ 금번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시까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등을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집체교육**을 받는 것 보다 **사업장 자체실시** 필요

\* 인터넷 원격교육 또는 우편통신교육 제외

- 소속근로자가 다양한 장소에서 분산근무하는 경우 가급적 **소규모 단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되,
  - 자체교육이 어려운 경우 위탁교육기관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교육** 실시
- **(재택근무 근로자의 정기교육)** 사무직근로자의 재택근무기간은 해당 근로자의 정기교육 기간 산정에서 제외
- ▶ **(안전보건교육 우수 사례)** 강사 및 근로자 전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열화상카메라 또는 비접촉 체온계 비치 등 **[공통]**
  - 교육장소를 개방된 공간으로 변경하고 1회 4명 이내, 최대 10명을 넘지 않도록 함. 근로자간 좌석은 최소 1.5미터 ~ 2미터 이상 이격
  - TBM을 이용한 작업 전 10분 이내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안전보건**” App 이용 TBM 실시
  - 10명~15명 부서 단위로 카톡방 개설 후 매일 아침 교육자료 게시, 관리감독자가 개별근로자별로 교육자료 내용의 주지(숙지) 여부를 확인하여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맨투맨 교육
- **(인터넷원격교육시 관리감독자 집체 및 현장교육 유예)**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인터넷원격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집체 또는 현장교육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유예
  - 금번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예된 집체 또는 현장교육 이수

### ③ 감독·점검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

-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 숙지 여부 확인

◆ 사업장 감독·점검시 실질적인 교육 실시 여부는 그 근로자의 작업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숙지(주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

\* 사업주가 실시한 교육 내용과 근로자가 받은 교육내용이 일치하고 근로자가 이를 숙지(주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 **(교육일지 작성 및 근로자 서명)** 근로자 서명을 받기위해 교육 일지를 공람하거나 근로자들을 특정장소에 집결토록 하지 말 것
- **(심층 인터뷰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숙지(주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한 교육 실시 여부 확인**
  - \*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에 대해 근로자 대부분이 숙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심층 인터뷰 등 생략
  - 무작위로 선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내용 등에 대해 대부분의 근로자가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실시 불인정\*\*(과태료 부과)**
    - \* 교육 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이나 그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사항, 교육 강사나 교육 장소 등에 대해 질의
    - \*\* 근로자가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주가 교육실시 여부를 소명하는 경우 이를 검증하여 교육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

### ④ 기타

-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따를 것
  - 대응 지침은 현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음
  - \* '20.4.6. 8판 발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 ⑤ 시행시기: '20. 2. 4. ~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위기탈출 안전보건 APP 설치 및 사용 방법

<p>1) 구글스토어 → 『위기탈출안전보건APP』 설치</p>	<p>2) 위기탈출안전보건APP → 『10분 안전교육』 선택</p>	<p>3) 『교육 종류』 선택</p>
<p>4) 개인정보 입력 및 교육담당자 e-mail 입력</p>	<p>5) 『교육 종류』 선택</p>	<p>7) 기록 시작 확인 → 안전보건자료 선택</p>
<p>8) 당일 교육 내용 선택 → 교육 시작</p>	<p>9) 교육 종료 후 → 교육종료버튼 선택</p>	<p>10) 교육내용 전송</p>